

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문

대상펀드: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 제2호[채권혼합] (舊 신한내가찾는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혼합])

1. 본 안내문은 금융위원회의 '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관련 가이드'에 근거해 신한자산운용(주)이 운영하고 있는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 2 호[채권혼합] (舊: 신한내가찾는증권투자신탁제 1 호[주식혼합]) 수익자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.
2. 신한자산운용(주)은 '신한내가찾는증권투자신탁제 1 호[주식혼합]' 의 C-s 클래스에 설정시점인 2020 년 9 월 1 일, 금융위원회의 '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관련 가이드'에 따라 당사의 고유자금(당사자금) 2 억원을 투자했습니다. 이는 당사가 운영하는 공모펀드에 당사의 고유자금(당사자금)을 직접 투자하여 책임투자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. 설정 이후 6 개월되는 시점인 2021 년 3 월 1 일 소규모펀드로 지정되어 집합투자규약 제 43 조에 의거 '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 2 호[채권혼합]'으로 전환되었습니다.
3. 금융위원회의 가이드에 의하면, 자산운용사는 자사의 투자금을 투자한지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회수(환매)할 수 있으나,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3년 의무투자의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본 건은 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었으므로,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. 이에 따라, 2021년 3월 26일(자펀드 편입일) 이후 당사의 투자금을 회수(환매)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반드시 회수(환매)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, 회수(환매)할 수 있음을 미리 고객님의 알려 드리기를 위해 본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는 것입니다
4. 투자금을 회수(환매)할 경우에는 2 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(환매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%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에 회수(환매)할 수도 있습니다. 분할 회수(환매)는 회차별로 1 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, 1 회당 회수(환매)금액은 투자금의 50%이내로 할 것 입니다.
5. 당사가 당사의 투자금을 회수(환매)하더라도 이는 고객님의 투자금과는 무관하며, 펀드는 정상 운용됩니다.
6.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 리테일영업 1 실 김한솔 대리 (02-767-9124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고객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년 3월 30 일

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
대 표 이 사 이 창 구

